#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공포 제2026-5호(개정 2026. 10. 15.)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안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가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서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평생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원은 장안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삼천병마로 1182(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460번지) 장안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26.10.15.)

## 제2장 조직

**제4조(원장)** ① 본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교직원)** 본원에는 필요한 교직원을 두며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2(전문위원)** ① 본원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평생교육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본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 장이 된다.

**제7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사업계획(자격 포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6.)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학습인원 및 학습비(자격관련 비용 포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6.)
5.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4장 설치과정

**제10조(학습기간)**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제11조(학습일수)**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지원자격)**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 ·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선발방법)** 본원의 수강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설치과정 등)** ① 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교육과정 편성시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15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신설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원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또는 외부 전문강사의 프로그램을 추천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제15조(학습비)**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을 준용한다.

**제16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교육과정 교과목을 70% 이상 이수한 자로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별표 1]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5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제17조(자치회)**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 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18조(학습자 활동의 금지)**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본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 행동 · 농성 및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개정 2024.9.3.)

**제19조(포상)**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 제6장 회계

**제20조(회계연도)** 본원 회계연도는 장안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1조(예산편성)** 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본원의 회계업무는 장안대학교 '재무 · 회계 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7장 강사료 및 제수당

**제23조(강사료)** 평생교육원 강사료는 외부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이 결정한 강사료를 적용하며, 일반과정 및 자격증 등 평생교육원 운영강좌의 경우 모집 수강료 또는 모집인원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9.3.)

**제24조(성과급)** 평생교육원 강좌 운영 중 정규과정(봄학기, 가을학기)외에 방학특강(여름,겨울) 또는 자격증 과정이 개설될 경우에는 운영, 홍보, 수강생모집 등 업무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전문위원 수당)** 연구 ·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장 자격과정의 설치 및 수수료 [본장 신설 2026.1.6.]

**제26조(목적)** 이 장은 평생교육원이 「자격기본법」 및 「자격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 ·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과 자격 검정, 자격증 발급 및 수수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민간자격의 설치 및 관리)** ① 평생교육원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주무부 장관에게 등록된 민간자격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자격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자격별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28조(자격검정의 시행)**
① 자격 검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검정 기준, 응시 자격, 평가 방법, 검정 위원 구성 및 세부 절차는 자격별로 정한다.
③ 검정 시행 및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원장이 정한다.

**제29조(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자격 검정을 통과한 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② 자격증의 재발급은 분실·훼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수수료)**
① 검정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등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 2]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보칙)**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교육부 민간자격 등록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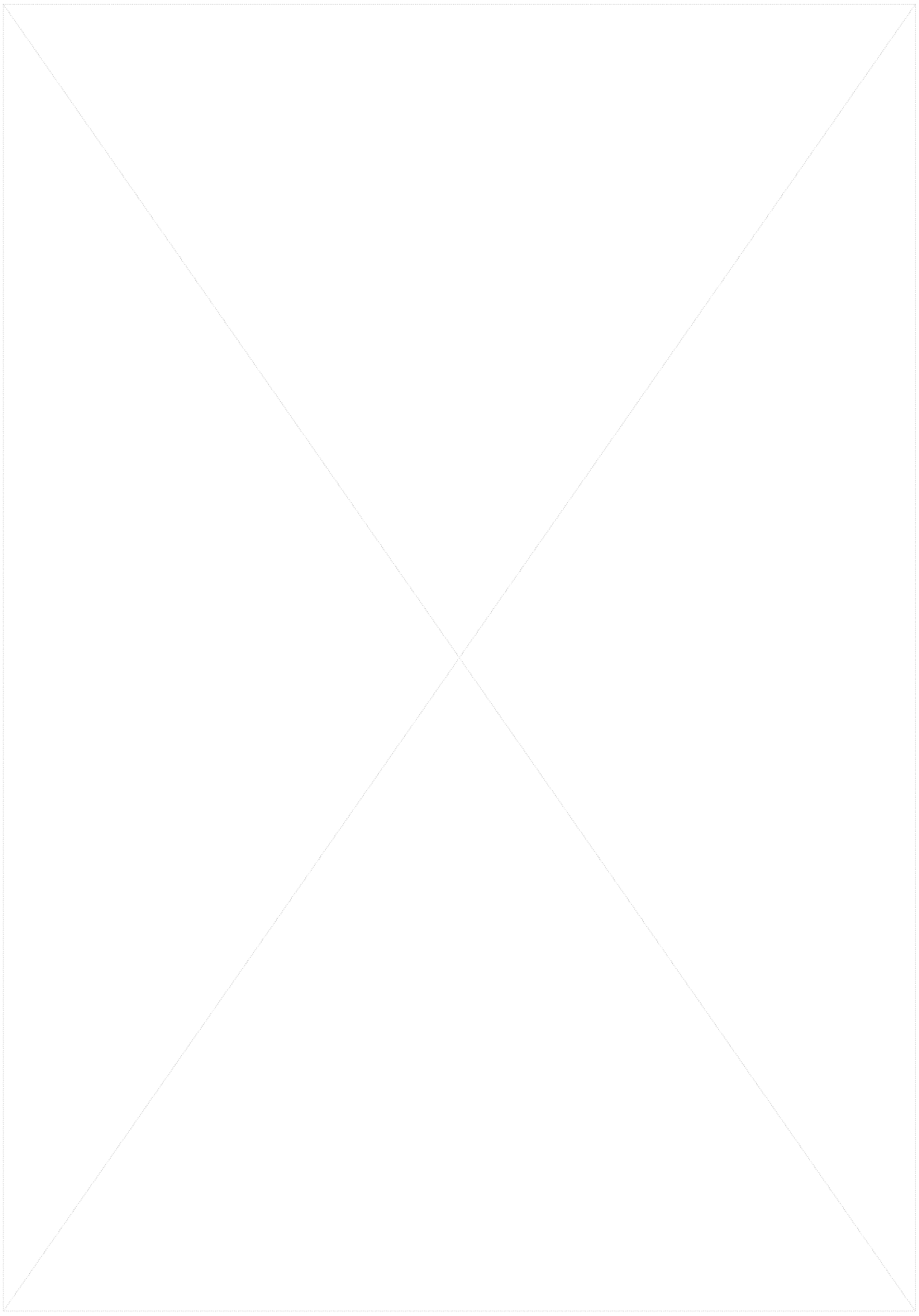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2]자격증 발급 관련 비용 내역<개정2026.10.15.>

| 구분 | 발급 수수료 또는 비용 | 발급 대상 및 산출근거 |
|---|---|---|
| 검정 응시료 | 50,000원 | 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증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 |
| 검정 응시료 (파크골프지도사 과정에 한함) | 100,000원 | |
|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 30,000원 | 분실·훼손으로 인해 자격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 시험 감독 비용 | 100,000원 | 가. 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험감독 및 문제출제 포함(4시간 기준)<br>나. 파크골프지도사, 바른자세필라워킹 과정의 경우 실기의 시험감독에게 인당 지급한다 |